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안 건 명

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
운용 계획 변경안

## 2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1일(수)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3일(금)

## 3. 제출이유

2019. 7. 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 
설치·운용 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  
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 
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폐지  
- 기금운용 기한 : 2019. 6. 30까지
- 나. 기금조성액 3,452,249천원은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 
전출 처리(2019. 7. 1.)

(단위:천원)

합계	용자금			예치금		
	소계	회수시기경과 (채납액)	회수시기미도래 (용자금원금)	소계	정기예금	공금계좌
3,513,269	61,020	7,700	53,320	3,452,249	3,308,423	143,826

다. 기존의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의 수입으로 처리

## 5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조성)와 같은 조례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